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00

발의연월일: 2021. 11. 24.

발 의 자:이 영·김용판·송언석

이명수・김성원・윤창현

조명희 · 김상훈 · 홍문표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19.1.1.~'20.12.31.)하였으나, 청년 또는 중·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시행('20.7.10.~'21.12.31.)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취득 당시 가액 기준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인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이 제외되어 관련 제도의 감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9천만원

으로,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4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상향해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를 "합산소득이 9천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4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혅 정 아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 및 「주택법」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한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 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9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천만원 이하-----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u>4억</u>
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
로 한다)
<u>2023년 12월</u>
31일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